

## 집단소송 제안 협의서 공고문

**대상:** 미국 장애인법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로스앤젤레스 시 및 로스앤젤레스 시와 로스앤젤레스 자치 행정구의 비상 대비 계획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주민들.

### 집단소송 공고문

본 공고문의 목적은 로스앤젤레스 시 및 로스앤젤레스 시와 로스앤젤레스 자치 행정구의 비상 대비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미결 집단소송에 제안된 협의건에 대해 알리기 위함입니다. 본 집단소송 협의서(“협의서”)는 사건번호 CV 09-0287 CBM (RZx) 자유독립 지역사회 외 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시 및 자치 행정구 소송과 관련하여 로스앤젤레스 자치 행정구에 의해 협의되었으며,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09 년에 제기된 본 소송은 로스앤젤레스 시와 자치 행정구 측이 비상대비건에 있어 장애인의 필요요건을 다루지 않음으로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는 본 협의서의 당사자가 아니며 독립된 법원 명령 대상입니다.

### 소송 집단 정의

현재 로스앤젤레스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시 및 자치 행정구의 비상 대비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관할 하에 있는 장애를 가진 주민들은 본 소송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협의서의 구성원입니다. 각 구성원의 권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본 공고문을 읽어보도록 권장합니다.

### 협의 제안서 요약

행정구는 협의서 내용의 일부로서 비상 대비 계획에 있어 장애인의 필요요건을 다루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거나 혹은 취하게 될 것입니다:

### 장애 및 AFN 부록

행정구가 장애·접근·기능적 요건 부록 (“장애 및 AFN 부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로스앤젤레스 자치 행정구 행정지역 비상 대비 계획입니다. 장애 및 AFN 부록은 행정구 비상 대비 계획의 일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장애 및 AFN 부록은

HOA.958348.1

자유독립 지역사회 외 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시 및 자치 행정구

제안 협의서 공고문

장애인의 재해 관련 필요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을 다루고, 이동장애, 감각장애, 지적장애, 정신건강장애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적인 장애 범위를 포함하며, 비상 대비 계획에 있어 장애인의 필요요건에 대한 행정구의 비상 대비 계획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 및 AFN 부록에서는 비상 공시의 목적을 위해 행정구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이용 가능한 집단 공시 시스템에 대해 숙지시키며,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대피 및 기타 비상 활동 시 적절한 수량의 사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보장할 것입니다. 행정구는 판매업자, 기타 부서 및 기관과의 지속적인 조정을 통하여 필요한 대피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부록은 장애인 서비스, 접근 및 기능적 필요사항의 지속 계획을 보장합니다. 앞서 언급된 사항들은 부록에서 다뤄진 다수의 중요 사항들 중 일부 예시에 불과합니다. 본 협의서에 첨부된 최근 버전의 장애 및 AFN 부록은 입안 단계에 있으며,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아래 명시된 작업계획에 맞게 계속하여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애 및 AFN 부록은 비상 대비 계획과는 독립된 문서로 작성되었으나, 행정구는 협의서의 일부분으로 장애, 접근, 기능적 요건과 관련된 사항들이 행정구 차원에서 비상 대비 계획에 통합되는데 동의했습니다.

### **작업계획 수립**

장애 및 AFN 부록의 작성에 있어, 당사자들은 현재 버전의 장애 및 AFN 부록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 작업과 더불어 추가적인 부록 또는 정책의 수립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사안들을 발견했습니다.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행정구는 이러한 추가 현안들의 작성 및 마무리를 위해 특정 결과물과 시간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당 현안들은 특히 행정구 웹사이트를 접근 용이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안, 사전 확인된 대피소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 및 보장하는 안, 접근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행정구에서 대피소 선택 기준 수립을 진행하는 안,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락망을 수립 및 유지하는 안, 비상 대비 계획 준비사항 및 교육자료를 유포하는 안, 장애, 접근, 기능적 요구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비상 의사소통 수단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 안, 장애, 접근, 기능적 요구가 필요한

HOA.958348.1

자유독립 지역사회 외 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시 및 자치 행정구

주민들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복구작업그룹 수립 안 등을 포함합니다. 작업계획 결과물은 관리감독 기간에 걸쳐 시행될 계획입니다.

### **AFN 조정자**

또한 행정구는 협의서의 일부 현안으로 로스앤젤레스 자치 행정구의 비상계획이 장애를 가진 주민들의 필요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있어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자치 행정구 주요 직원으로 접근 및 기능적 필요(“AFN”) 조정자를 고용했습니다. AFN 조정자는 비상 대비 계획을 담당하는 기관 및 행정구 직원과 직접 협력 및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지역사회 원조**

장애 및 AFN 부록의 작성에 있어, 행정구는 현재 발행된 장애 및 AFN 부록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 피드백 및 의견을 수집하여 고려하였으며, 이는 국민여론, 법무부, 원고측 자문위원의 의견을 포함합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구는 여론조사를 위해 장애 및 AFN 부록을 게재하였으며 피드백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현 비상 관리 구조의 일환으로, 정부 파트너 (자치 행정구, 도시, 자치 행정구 내 지역 관할권 포함), 공립학교, 위생시설, 수도국과 같은 특별구, 지역사회 및 종교기반 기관을 포함한 비정부 비상 서비스 파트너를 일원으로 포함하는 행정 지역 자문위원회 (OAAB)가 있습니다. OAAB 에서는 지역사회 원조의 일환으로 육체, 감각, 인식장애를 대표하는 기관을 위해 지정된 자리 3 곳을 포함시켰습니다. OAAB 에서는 또한 AFN 위원회를 수립하였으며,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장애인들을 지원하거나, 그리고/또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OAAB 및 AFN 위원회는 장애 및 AFN 부록과 작업계획의 실행을 위한 원조를 계속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사회에는 행정구 및/또는 감시기관(아래에 명시됨)의 자원활동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지역 거주 센터, 독립 거주 센터, 장애 특정 기관 (캘리포니아 맹인 협회 및 대로스앤젤레스 난청기관 등), 그 밖의 기타 장애기관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최소 17 곳의 지정기관을 포함할 것입니다.

## **감시 및 관리감독기관**

행정구는 협의서 내용에 따라 최소 6 년의 기간 동안 감시를 받게 되며, 법원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집행의 목적으로 본 소송건의 관할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를 관리감독 기간이라고 칭합니다.

행정구는 양 당사자간 사전 합의하였듯이 제 3 자 감시기관인 글로벌 비전 컨소시엄 (GVC)을 고용할 것입니다. GVC 는 행정구의 작업계획 실행 진행상태 평가 및 행정구 비상대비 계획의 맥락에서 장애인의 필요요건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정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감시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 **소송 결의안**

본 협의안은 2009 년 1 월 14 일자로 소송이 제기된, 로스앤젤레스 자치 행정구, 해당 산하기관, 후임자, 선임자, 담당자에 대한 선언 및 가처분 구제를 위한 모든 종류의 소송을 법원의 사건 관련 관할 기간 동안 철회하고 취하합니다.

본 협의서는 원고 또는 소송 구성원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보조금도 제공하지 않으며, 소송 구성원이 제기할 수도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취하는 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 비용**

본 소송 집단은 장애인권옹호단체 및 장애인권법적기관 (“집단변호”)의 변호를 받았습니다. 행정구는 타당한 변호사 선임비와 연장 시간 비용 및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집단 소송 법적 기관에 미화 122 만 5 천 달러를 지불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행정구는 관리감독 기간 동안 부록 및 작업계획의 실행 진행과정 검토의 목적으로 최대 미화 7 만 5 천 달러의 집단소송 변호사 선임비 및 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했습니다.

## **협의서 공정성**

집단소송 변호인은 제안된 협의서의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소송집단을 위한 최선의 협의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송 변호인은 본 결론에 이르기까지 협의로부터 발생하는 혜택, 해당 사안들과 관련된 계속되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지속되는 소송 및 항소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였습니다.

## 협의사항에 대한 이의

법원에서는 협의서에 관한 사전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제안된 협의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최종 승인하기 위해 2013년 5월 14일 오전 9시 312 North Spring Street, Los Angeles, CA 90012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미지방법원 Honorable Consuelo B. Marshall 법정에서 열리는 공판 일정을 잡았습니다. 집단소송 구성원들은 공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 공판에 참석하고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판 날짜는 법원에 의한 전체 집단 대상 추후 공지가 없이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공판 일정 변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목록에 이름이 기재되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참석공지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집단 구성원 중 일부라도 앞서 언급된 협의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편지 또는 전자메일, 또는 전화, 전신타자기, 그리고/또는 영상중계서비스, 또는 집단소송 변호인이 수립한 수신자 부담 번호를 통해 집단소송 변호기관에 이의 사항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3년 4월 6일까지 이의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이의사항은 달력 날짜로 5일 이내에 집단소송 변호기관에 의해 주 변호인에게 제공되며 법원에 제출됩니다. 해당 이의 신청에서 추구하는 경우, 이의 내용을 언급한 소송 구성원은 공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의 신청을 제출하지 못한 소송집단 구성원에게는 제안된 협의서의 타당성 및/또는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 법정에 오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의 사항은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원고 및 협의집단 변호인:

변호사: 캘리포니아 대 로스앤젤레스 자치 행정구 협의  
Disability Rights Advocates  
2001 Center St., Fourth Floor  
Berkeley, CA 94704  
이메일: [general@dralegal.org](mailto:general@dralegal.org)

수신자 부담 번호: (877) 603-4579

전신 타자기: (510) 665-8716 or (877) 603-4578

본 협의서에 관한 이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에 나타나거나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적 구속력**

법원에서 마지막 승인을 내리는 경우, 본 제안 협의서는 감시 기간 동안 협의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는 협의 내용의 집행에 대한 소송을 제외한 협의서에 포함된 모든 현안들과 관련한 공정한 구호를 요구하는 협의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 **부수적 정보**

본 공고문에는 소송과 협의서의 조건들이 단지 요약되어 있을 뿐입니다. 협의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 또는 협의서 사본은 다음의 주소를 통해 집단 변호인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Disability Rights Advocates

변호사: Shawna L. Parks

2001 Center St., Fourth Floor

Berkeley, CA 94704

510-665-8644 (Voice)

510-665-8716 (TTY)

이메일: [sparks@dralegal.org](mailto:sparks@dralegal.org) 또는 [general@dralegal.org](mailto:general@dralegal.org)

또는 집단 변호인의 웹사이트인 다음 주소를 통해 구하실 수 있습니다:

[www.dralegal.org](http://www.dralegal.org) 또는 [www.disabilityrightslegalcenter.org](http://www.disabilityrightslegalcenter.org)

또는 다음의 주소를 통해 서기관 사무실에서 소송건에 대한 상담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방법원 서기관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312 North Spring Street

HOA.958348.1

자유독립 지역사회 외 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시 및 자치 행정구

제안 협의서 공고문

Los Angeles, CA 90012

참고: 자유독립 지역사회 외 대 로스앤젤레스 시 및 자치 행정구,

사건번호: CV 09-0287 CBM (RZx)

**대안적 형식으로 작성된 본 공고문의 사본을 구하시려면, 앞서 언급된 집단소송 변호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